

2026년도 제1회 대구소년원 운전직 [운전서기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법무부 대구소년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대구소년원장

1 임용예정인원 (운전서기보,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운전	운전서기보 (9급)	1명	정년 적용	법무부 대구소년원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운전	운전직	운전서기보 (9급)	○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관리 ○ 보호소년 등에 대한 감호, 당직 근무 ○ 일반행정업무,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수동변속기 차량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 실시권 위임규칙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 12. 9.)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운전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국내 자격증에 한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군 운전면허 아닌, 경찰청에서 발급된 면허증만 가능)※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전체 경력'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6. 11. 9.) 기준]

우대요건	<p>○ 대형승합자동차 운전 근무경력(경력 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1. 1. 이후 운전경력으로 1년 이상 경력에 대해 우대 (3년 이상 운전 경력에 최고점 부여) -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운전 근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승차정원 36인 이상의 차량 운전 경력 : 경력증명서상 해당차량 운전경력이 확인 가능해야 경력으로 인정 - 군 운전경력의 경우 응시자격요건과 동일한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운전 근무경력, 군 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 경력은 불인정 <p>※ '우대요건 고려사항' 및 [표 1]운전분야 근무 경력 필수 사항 확인</p> <hr/> <p>○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무사고 및 교통법규 준수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 경력 '전체 기간' 무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여부(군 운전경력도 해당)에 따라 차등 배점 - 공고일 이후 경찰청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로, 대형 면허취득일과 상관 없이 ① 운전면허경력 ② 법규위반 ③ 교통사고를 모두 포함하여 경력 조회기간을 전체기간으로 지정하여 발급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것이거나, 조회 기간이 '전체경력'이 아닌 경우 최대점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경력 감점 조치 ※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의 경우 횡수와 관계없이 최대감점 처리 <hr/> <p>○ 업무 관련 자격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은 '국내 국가기술자격증'인 경우만 해당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 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을 제출 ■ 운전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 2] 운전 관련 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확인 ※ 복수 자격증 소지 경우 최고점 1개만 인정 ■ 전산 및 사무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 3] 전산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확인 ※ 복수 자격증 소지 경우 최고점 1개만 인정
------	--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우대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2026. 11. 9)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서류전형 시 이력서 상에 기재한 우대사항요건 중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 경력 관련

- 자격요건 충족(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가능, 1년 이상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3년 이상 운전 경력에 최고점 부여)
 - ※ '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군 경력의 경우 응시자격요건과 동일한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2019. 1. 1.부터 수송병과(운전병)로 인원 수송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 경력이 '군 운전경력확인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등으로 증빙된 경우에 한해 인정 (보병, 포병 등 다른 병과 경력은 근무경력으로 불인정, 승용·화물·특수·이륜차량 등 경력은 제외, 병과·주특기 기재만으로 운전경력 인정 불가)

[표 1] 운전분야 근무 경력 필수 사항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제출된 건에 한해 인정하고,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상에 실제 근무기간(년.월.일), 전임/비전임 여부,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내용과 전담여부, 운행차종, 승차인원이 모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담당업무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 불인정,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명시되지 않으면 불인정
 - ※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 (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이 산정되므로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주 40시간 초과 시에는 주 40시간으로 간주)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운전 분야 근무경력은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동일기간에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근무기간이 긴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휴직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휴직기간 반드시 기재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발급(재직증명서에 한함)

[표 2] 운전 관련 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舊 자동차검사기사, 舊 자동차검사산업기사, 舊 자동차검사기능사

※ 국내 국가기술자격증인 경우만 해당함. 복수 자격증 소지 경우 최고점 1개만 인정

[표 3] 전산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舊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 국내 국가기술자격증인 경우만 해당함. 복수 자격증 소지 경우 최고점 1개만 인정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응시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에 따라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10명 선발(적극적 서류전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전문지식과 그 능력
 - (평가방식) 응시번호 순으로 개별면접,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10. 30.(금) ~ 11. 9.(월)	'26. 11. 5.(목) ~ 11. 9.(월)	'26. 11. 27.(금)	'26. 12. 9.(수)	'26. 12. 28.(월) 예정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11. 5.(목) ~ 11. 9.(월),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41442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99길 12 대구소년원 행정지원과 채용담당(운전직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053-260-7267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첨부)	○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7호
	운전면허증 사본 사본 1부 ※ 경찰서에서 발급된 면허증만 가능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경찰서 발행(인터넷 발급은 문서확인번호 및 타임스탬프 '진본' 표시 필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별지서식 제8호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별지서식 제9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10호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 별지서식 제11호
	최종학위(졸업)증명서 사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 및 대학원 학위(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제척 확인으로만 사용,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개별사항 (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① 우대요건(대형승합자동차 운전 근무경력) 재직(경력)증명서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①번: 별지서식 제12호 참고 ※ ①,②번 함께 제출 ※ 제출된 자료는 최종합격 예정자에 대해서만 검증함
	② 우대요건 기간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및 '소득금액증명서' 각 1부 ※ 회사 합병 등으로 회사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경력증명서상의 회사명칭과 다른 경우에는 4대 보험에서 과거 회사명칭과 현재 회사명칭의 변경내역이 나오도록 할 것 → 회사명칭의 변경내역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해당경력 불인정	
	운전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열거된 자격증에 한함)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각 1부(열거된 자격증에 한함)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별지서식 제13호)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별지서식 제14호)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12. 28. ~ '27. 1. 28.
- 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 발급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7. 1월 ~ 2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대구소년원 행정지원과(053-260-7267)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운전직	운전서기보 (9급)	1명	대구소년원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행 및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 공용차량 관련 제반업무 등 ○ 보호소년 등에 대한 감호, 당직 근무 ○ 행정업무 지원 등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p>* 수동변속기 차량</p>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윤리의식(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공동체 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유연한 사고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문제해결력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관련 법규 및 도로체계 관련 지식 ○ 차량운행 및 유지·보수·관리 관련 지식 ○ 유사시 차량 응급조치 관련 지식 ○ 소년보호제도 및 정책 관련 지식 		
응시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국내 자격증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 응시 불가 		
우대요건 (서류전형에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1. 1. 이후 운전분야 근무경력(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운전경력) ○ 운전면허 취득 이후 운전 경력 '전체기간' 무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여부 ○ 운전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舊 자동차검사기사, 舊 자동차검사산업기사, 舊 자동차검사기능사 ○ 전산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舊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p>※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공고문 참고</p>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서식 제1호 작성 ○ 응시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급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2. 이력서 1부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서식 제3호 작성 ○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서식 제4호 작성 ○ A4 3매 이내로 작성
5.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서식 제5호 작성(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서식 제6호 작성(자필 서명 필수)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서식 제7호 작성(자필 서명 필수)
9.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국내 자격증에 한함) -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 응시 불가
10. 운전경력증명서 1부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26.10.30.) 이후 경찰청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로, 대형면허취득일과 상관 없이 ① 운전면허경력 ② 법규위반 ③ 교통사고를 모두 포함하여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지정하여 발급 ※ 인터넷 발급 증명서는 문서확인번호 및 타임스탬프 ‘진본’ 표시가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인 경우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에는 불인정
11.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서식 제8호 작성(자필 서명 필수)
12.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서식 제9호 작성(자필 서명 필수)
1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서식 제10호 작성(자필 서명 필수)
14.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서식 제11호 작성(자필 서명 필수)

구 분	내 용
15.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사본 1부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 및 대학원 학위(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전형위원 제척 확인으로만 활용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제공되지 않음
16. ① 우대요건(대형승합자동차 운전 근무경력) 재직(경력)증명서 ② 우대요건 기간, '4대 보험(고용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및 '소득금액증명서' 각 1부 ※ ①, ②번 함께 제출 : 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번: 별지서식 제12호 참고(해당회사에서 발급하는 양식으로도 제출 가능하나, 재직기간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19. 1. 1. 이후 운전경력으로 1년 이상 경력에 대해 우대 (3년 이상 운전 경력에 최고점 부여) ○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에 의한 대형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운전 근무경력에 한함 (군 운전경력의 경우, 응시자격요건과 동일한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를 운전한 근무경력)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제출된 건에 한해 인정하고,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상에 실제 근무기간(년·월·일), 전임/비전임 여부,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내용과 전담여부, 운행차종, 승차인원 모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담당업무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 불인정,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명시되지 않으면 불인정 ※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이 산정되므로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주 40시간 초과 시, 주 40시간으로 간주) ·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인정 ○ 동일기간에 경력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근무기간이 긴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휴직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휴직기간 반드시 기재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발급 (재직증명서에 한함) ○ 증빙서류 미제출 및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26. 11. 9.)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합병 등으로 회사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경력증명서상의 회사명칭과 다른 경우에는 4대 보험에서 과거 회사명칭과 현재 회사명칭의 변경내역이 나오도록 할 것 → 회사명칭의 변경내역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해당경력 불인정
17. 운전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열거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 정비기능사, 舊 자동차검사기사, 舊 자동차검사산업기사, 舊 자동차 검사기능사 ※ 자격증은 국내 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 복수 자격증 소지 경우 최고점 1개만 인정
18. 전산 및 사무관리 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열거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舊 정보처리 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 자격증은 국내 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 복수 자격증 소지 경우 최고점 1개만 인정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응시원서

대구소년원장 귀하

본인은 법무부 대구소년원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			
응시직급 및 분야		운전서기보 / 운전직	
응시자격		자격증(1종 대형 운전면허)	
※응시번호	운전-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 도로명 주소 기재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5,000원) 또는 첨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2026년 제1회 운전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운전서기보 / 운전직	
응시자격			
※응시번호	운전-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할 예정이며,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 『응시원서』 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직급과 분야 기재
예) 운전서기보 / 운전직
 -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자격 】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우대요건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경력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예) 운전분야 경력 요건 중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 취득 후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2010년부터 운전 경력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 있을 시, 2019. 1. 1. 이후 경력이 ‘3.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자격증 명시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직급	운전서기보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력,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글자체 맑은고딕 15포인트, 줄간격 160%)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운전서기보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력,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본인이 해당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유, 해당 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 및 연구실적, 해당 직위의 업무추진 전략 및 수단, 주요 업적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대구소년원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면허증,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면허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면허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105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내용의 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구소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통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구소년원장 귀하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대구소년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원 채용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정보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2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3	범죄경력(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서식 제8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u>공직자로 재직</u>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table><tr><td>있음</td><td>☐</td></tr></table>	있음	☐	<table><tr><td>없음</td><td>☐</td></tr></table>	없음	☐
있음	☐					
없음	☐					
<p>※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u>부패행위</u>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p>※ <u>부패행위</u>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p> <p>※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u>부패행위 비해당</u>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u>부패행위 해당</u></p>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u> ,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u>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u> —	<table><tr><td>해당</td><td>☐</td></tr></table>	해당	☐	<table><tr><td>비해당</td><td>☐</td></tr></table>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u> —	<table><tr><td>해당</td><td>☐</td></tr></table>	해당	☐	<table><tr><td>비해당</td><td>☐</td></tr></table>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성 명 :

(서명)

<별지서식 제9호>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소년원 직원 중 친인척 관계가 있다. (유 : ☐ , 무 ☐)
- 친척 관계에 있다면 ()촌 이내의 관계이며, ()에 근무 중인 (성명:)이다.
- ※ 친인척(민법상 친족)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배우자의 4촌 이내의 인척 포함)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생각한다 : ☐ / 생각하지 않는다 :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 제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비위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유 : ☐, 무 ☐)
- (과면 : ☐ / 해임 : ☐)된 사실이 있으며, 소속 기관 ()에서 (20 년 월 일)자로 퇴직하였다.
 -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으며, (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거나 공직자 비위면직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생년월일 :

○ 성 명 : (서명)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 ① 수집.이용 목적
 - 공공기관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여부 조사
-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대구소년원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성명, 공직자 비위면직사실여부
-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대구소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대구소년원(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강 북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해당사항이 발견될 시 채용 취소 및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 등)
-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대구소년원장 귀하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연,월,일)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내용 및 전담 여부 (자세히)	전임 또는 비전임 (주당 근무시간)	비고																
	부터	까지																					
	(예시) 2022.06.30.	2024.07.01.			예) 운행차종(인승)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전임/비전임 (주 00시간)																	
제외 기간	제외기간			제외사유																			
	(예시) 0000.00.00. ~ 0000.00.00.			(예시) 00휴직 등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div>위와 같이 증명합니다.</div> <div>2026년 월 일</div> <div>기관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div>직 인</div></div> <div><div>발급자</div><table><tr><td>담당자</td><td>직위:</td><td>성명:</td><td>(인)</td></tr><tr><td>확인자</td><td>직위:</td><td>성명:</td><td>(인)</td></tr><tr><td>인사부서 연락처</td><td>전화:</td><td colspan="2"></td></tr><tr><td></td><td>e메일:</td><td colspan="2"></td></tr></table></div>								담당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인사부서 연락처	전화:				e메일:		
담당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인사부서 연락처	전화:																						
	e메일:																						

-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위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가능
- ※ 근무기간(연월일), 직위, 담당업무(운행차종·승차인원), 주당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을 경우 경력 불인정
- ※ 기관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직인, 발급자인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경력 불인정

<별지서식 제14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소년원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